

충청북도시내버스등의운송사업지원을위한등록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안)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한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등록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과세면제) 자동차운수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자가 자동차 운수 사업법시행령 제2조 제1호(가)목 시내버스 운송사업 및 (나)목 시외버스 운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등록(저당을 포함한다) 하는 시내버스 및 시외버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32조의 2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록세를 면제한다.

제3조 (사무처리의 위임)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면제에 관한 사무는 당해 과세 객체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위임하여 처리한다.

제4조 (면제신청등)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면제를 받고자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시장·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부 칙

-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 (적용시한)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4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